

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.

1. 징계대상

가. 성 명: 설 재 경

나. 생 년 월 일: 1990.06.07.

다. 소 속: 나무감정평가법인 본사

(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0길 20, 103동 908호)

2. 징계내용

가. 징 계 종 류: 업무정지 6월

나. 효력발생일: 2024.02.26. ~ 2024.08.25.

다. 사 유: 감정평가법인등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,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제4항을 위반

2024년 2월 13일

국토교통부장관